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헬기조종)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헬기조종 | 경위 | 15 | 정년 적용 | 지방청 항공단(대) |

2 채용예정직무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
| 헬기조종 | 경위 | ○ 해양경찰청 보유 헬리콥터의 조종 운영 - 해상순찰,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 ○ 항공기 운항관리 및 항공안전 관련 업무 |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5조(시험의 방법), 제28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관련 법령(경찰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38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3세 이상 45세 이하('79. 1. 1. ~ '02. 12. 31.)

※ 응시연령 상한 연장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관련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나. 신체조건

| 구 분 | 내용 및 기준 |
|--------------|--|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 시 력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
| 색 신 (色 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함.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함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
| 청 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
| 혈 압 |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90 ~ 60mmHg, 수축기 145 ~ 90mmHg 범위에 있어야 함) |
| 문 신 |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

다.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4.4.)]

- 경력계산, 자격증 등의 유효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채용분야 | | 직위별 요건 | |
|------|----------|--|---|
| | | ※ 필수자격요건(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응시요건(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 |
| 헬기조종 | 응시 요건 | 필수 자격 (자격 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 경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 및 기장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p>※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p> <p>※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p> |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자격 및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25.4.4.예정)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경력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 함
 - * 검증을 위해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 모두 제출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기능실기)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8조, 제33조)

| 채용분야 | 직급 | 평가방법 | 시 험 과 목 |
|------|----|------|----------------|
| 헬기조종 | 경위 | 기능실기 | ○ 운항조종능력(모의조종) |

○ 합격자 결정: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200%(2배수) 선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나. 2차 시험(적성·신체)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 종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을 종합검정(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신체검사 <붙임4 참고>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기준으로 신체검사 판정관이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자 결정
 - ※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다. 3차 시험(서류전형)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25.4.4.)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가산점 해당 여부 판단
 - ※ 인정되는 가산점수(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격증에 한함)는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개인별 공개 후 수정기간(24. 3. 31. ~ 4. 1.) 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 응시자 필수서류(전형별 합격자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라. 4차 시험(면접)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가능성, 성실성 등을 평가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평가(2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단계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

마. 시험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기재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후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구분 | 적용범위 및 가산비율 | 비고 |
|-----------------|---|---|
| 취업지원 대상자 | 실기시험,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 미적용) | 임용예정계급이 경위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붙임5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은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한 자격증 중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격증만 인정
 - ※ 자격증 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갱신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인정
- 가산 자격증 중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 | 반영비율 |
|------|----------------|
| 헬기조종 | 실기 75%, 면접 25% |

-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실기 → ③ 면접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6 시험 일정

| 구분 | 시험공고 (원서접수)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 적성·신체검사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 일정 | '25. 2. 5.(수) (2.5(수)~17(월)) | '25. 2. 24.(월) ~ 28.(목) (3.7.(금)) | '25. 3. 15.(토) (신체검사 현장 고지) | '25. 3. 28.(금) (불합격자 개별 통보) | '25. 4. 4.(금) | '24. 4. 15.(화) 17:00경 |
| 장소 | 통합채용포털 | 별도 공지 | 인천 | - | 인천 | 통합채용포털, 홈페이지 등 |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 게재 예정
※ 서류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별도 게재하지 않으며 불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접수일시 및 방법

- 기간 : 2025. 2. 5.(수) 17:00 ~ 17.(월) 17: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 취소 가능 기간 : 2025. 2. 18.(화) 09:00 ~ 20.(목) 18:00
-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사진 : 응시원서 제출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필요
- 응시표 출력 : 2025. 2. 21.(금),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안 내 사 항 》

- 응시료 : 7천원(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통합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8 제출서류 안내

- 1차 시험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별도 공지 예정(원서접수 시 없음)
- 별도 공지된 서류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전형의 포기로 간주하여 처리
- 원서접수 시 응시자격 및 경력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보완) 서류 제출 요구 可 ※ 제출서류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4. 15. ~ 5. 14.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교육 및 임용

- 교육 입교일 : 2025년 5월 17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원 입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 교육원 입교예정일('25. 5. 17.)까지 입교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 可
(참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 예정지에서 임용
-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신청 가능
※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10 안내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또는 통합채용포털 (<https://career.gosi.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25.4.15.) ~ 일주일 간(25.4.22.)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증명' (Minwon Jeongmyeong) and includes a section for '민원증명 이용시간' (Minwon Jeongmyeong Usage Time) and '민원증명 이용절차' (Minwon Jeongmyeong Usage Procedure). The procedure is divided into four steps: 01 홈택스 로그인 (Hometax Login), 02 민원증명 신청진행 (Minwon Jeongmyeong Application Progress), 03 민원증명 처리결과 (Minwon Jeongmyeong Processing Result), and 04 발급완료 후 프린터 출력 (After Issuance Complete, Print). Step 02 is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and the number '2.' next to it. The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바로가기' (Quick Links) section with various service icons.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 일정 등) 교육훈련담당관 : 032-835-2436, 2636, 2736

※ (임용유예) 인사담당관 : 032-835-2534

※ (담당 부서) 항공과 : 032-835-2377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 임용예정계급 | 채용예정인원 | 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
| 경위 | 15명 | 헬기조종 | 지방청 항공단(대) |

| | |
|-------|--|
| 주요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 임무에 투입되는 헬리콥터 조종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순찰,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대형함정 탑재(이·착함), 통합방위·대테러 작전, 시험비행 및 교육훈련 등 ○ 항공기 운항관리 및 항공안전 관련 업무 ○ 그 밖에 헬리콥터 운용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 | |
|-------|--|
| 필요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 |
|-------|--|

| | |
|-------|--|
| 필요 지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행 관련 전문지식 및 항공안전 분야 지식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항공기상, 항공교통관제 관련 지식 및 영문 교범 해석 능력 ○ 해양경찰 임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비행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

| | | |
|--|-------------|---|
| <p>※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p> <p>※ 필수자격요건(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응시요건(경력)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p> | | |
| 응시 자격요건 | 필수 자격 (자격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헬리콥터에 한함)을 소지한 사람 ○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 경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1,0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헬리콥터 조종시간 총 500시간 이상 및 기장비행시간 100시간 이상을 보유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헬리콥터 조종경력 반드시 포함 * 공고일 첫날 기준 3년 이내 ※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모의 비행시간 제외(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

붙임 3

헬기조종 실기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경찰공무원(경위) 헬기조종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분야 | 계급 | 주요업무 | 평가사항 |
|------------|------|----|---|--|
| 1차 기능실기 | 헬기조종 | 경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순찰 ▶ 항공 수색 및 구조 ▶ 주·야간 함상 이·착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비행술 ▶ 야간 함상 이·착함 절차 ▶ 계기비행 절차 ▶ 항공실무능력 |

헬기조종(경위) 실기시험 평가표

| 평가내용 | | 배 점 기 준 | | | | 특 점 |
|---|--|----------|----------|-----------|-----------|-----|
| | | 우수 | 양호 | 보통 | 불량 | |
| 항공기 함정 이동 (제자리비행, 수평이동) (10점) | 함정 Hover(5점) * 10ft 유지 | ±5' | ±10' | ±15' | ±20' | |
| | | 5점 | 4점 | 3점 | 2점 | |
| | Side-Slip(5점) * 함정 좌현이동 | 0 | ±5° | ±10° | ±15° | |
| | | 5점 | 4점 | 3점 | 2점 | |
| 함 정 이함 요령 (20점) | 증속·상승(10점) * 침로 30° off, 500fpm 상승 | ±100 | ±150 | ±200 | ±250 | |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 선회·직진비행(10점) * 60kts시 함정침로 선회, 400ft, 100kts시 좌선회 | ±5° | ±10° | ±15° | ±20° | |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기본비행 (20점) | 증·감속시 고도(10점) * 400ft, 100kts 기준 | ±50' | ±100' | ±150' | ±200' | |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 상승·강하(10점) * 500fpm | ±100 | ±200 | ±300 | ±400 | |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함 정 착함 요령 (30점) | 강하률(15점) * 1.2nm, 400ft, 60kts 기준, 0.5nm까지 300fpm 접근 | ±50 | ±100 | ±150 | ±200 | |
| | | 15점 | 12점 | 9점 | 6점 | |
| | 동조기동 및 함정 착함(15점) | ±2.5' | ±5' | ±10' | ±15' | |
| | | 15점 | 12점 | 9점 | 6점 | |
| 계기비행 (20점) | 속도·Heading유지(10점) * 500fpm 상승·강하 | ±0°/±100 | ±5°/±200 | ±10°/±300 | ±15°/±400 | |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 고도·속도 유지(10점) *선회시(15°) | ±0'/±5 | ±50'/±10 | ±100'/±20 | ±150'/±30 | |
| | | 10점 | 8점 | 6점 | 4점 | |
| 특 점 계 | | 100 점 | | | | 점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 구분 | 내용 및 기준 |
|---------|--|
| 체격 및 질환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 색신 (色神)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
| 혈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 문신 |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 평가 항목 | 내용 |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
|-------------------------------|-----------------|---|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 팔다리와 손·발가락 |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
| |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 동시 자연스럽게 앉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앉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 | | | | |
|---------|-----------------------|------|--------|--|
| ①시험실시기관 | 응시계급 ^② ·분야 | 응시번호 | 성 명 | |
| | | | 주민등록번호 | |

검 사 내 용

| | | | | |
|-------------------------|--------|-------------------|-----|----------|
| 키 | cm | 체 중 | kg | |
| 허리둘레 | cm | 혈 압 | | |
| (교정)시력 | 좌: () | 색 신 (색 각) | 청 력 | 좌: ()dB |
| | 우: () | | | 우: ()dB |
| 종 양 질 환 | | 이 비 인 후 질 환 | | |
| 호 흡 기 질 환 | | 심 혈 관 질 환 | | |
|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 | 신 장 / 비 뇨 기 계 질 환 | | |
| 내 분 비 질 환 | | 혈 액 질 환 | | |
| 신 경 질 환 | | 피 부 질 환 | | |
| 근 골 격 계 질 환 | | 안 질 환 | | |
| 정 신 질 환 | | 흉 부 X 선 검 사 | | |
| 약물(TBPE)검사 | | 기 타 특 이 사 항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 | | |
|--------------------------------------|----------------------|-------|--|
|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판 정 보 류 | 합격 사유 | |
|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 | |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 나. ②란에는 응시한 계급과 분야를 적어야 합니다.
(예: 경감 변호사, 경위 혈기조증, 경장 함정요원, 순경 공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개인(결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벽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민성골수상벽혈병」에 해당하나 골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寛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5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 점수 분야 | 5 점 | 3 점 | 2 점 | 1 점 |
|----------------|--|--|--|--|
| 운 전 | - | -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
| 무 도 | | - 무도 4단 이상 | - 무도 3단 | - 무도 1·2단 |
| 정보처리 (전 산) |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응용기능사 |
| 전자·통신 (통 신) |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 통신설비·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전자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 통신·정보통신·방송 통신기사 | - 전자계산기제어·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통신선로 ·방송통신산업기사 |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통신기기 ·방송통신기능사 |
| 사무관리 | | | |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엑셀, PPT 중 1) |
| 법무·특허 | - 변호사, 변리사 | - 법무사 | - | - |
| 세무·회계 | - 공인회계사 | - 세무사, 관세사 | - 전산세무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 전산회계 1·2급 - 전산회계운용사 2·3급 |
| 차량정비 | - | - 자동차정비기사·기능장 |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 화 약 류 | - 화약류관리기술사 |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기사 | - 화약류제조·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 |
| 재 난 | - 건설안전기술사 |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기사 |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안전 ·소방설비·가스산업 기사 |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
| 안전관리 | - 수상구조사 | - | - 인명구조요원강사 | - 인명구조요원 |
| 의 료 | - | - 응급구조사 1급 |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
| 국 어 | -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 점수 분야 | 5 점 | 3 점 | 2 점 | 1 점 |
|----------|-----------------------|---|---|--|
| 영 어 | -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
| 일 어 | - | - J.L.P.T N1 - J.P.T 850 이상 | - J.L.P.T N2 - J.P.T 750 이상 | - J.L.P.T N3 - J.P.T 650 이상 |
| 중 국 어 | -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
| 잠 수 |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 잠수기능사 | - | - |
| 레 저 | - | -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2급 - 요트조종면허 |
| 해 양 |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항사) | - 해기사 5·6급(항해 기관 운항사) |
| 수산·어로 |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 수산양식기능사 |
| 드 론 | -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무인 헬리콥터·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
| 환 경 | - 폐기물처리기술사 | -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 처리기사 | - 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 환경기능사 |

※ 비고

-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 구분 | 인정단체 |
|--|--|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 |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의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크라쉬연맹 '24.1.1. 인정 취소 |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51) | - 대한기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대한합기도총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합기도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종합무술경기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해동검도협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예타이협회 - (사) 한국권투협회 '23.1.27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사) 한국킥복싱협회 신규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대한특전무술협회 인정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회 - 경찰무도교육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 ITF태권도협회 - 한국무예진흥원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23.1.27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인정 - 재남무술원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한국복싱협회 취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세계합기도연맹 - (사) 대한삼단봉협회 '24.1.17 신규인정 - (사)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24.3.8 신규인정 |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 - 택견보존회 |

※ '23.1.26.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한국복싱협회, 세계합기도연맹

※ '23.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는 단체(1) : 대한크라쉬연맹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 단체명 | 전화번호 | 단체명 | 전화번호 |
|------------------------------------|---------------|---|-----------------------------|
| 대한적십자사 | 02-3705-3617 |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 02-420-4293 |
| (재)한국YMCA전국연맹 | 02-735-4612 |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 02-720-7145 |
|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 02-886-8522 |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 055-551-9413 |
| (사)대한인명구조협회 | 02-975-1339 | (사)대한안전연합 | 062-222-0841 |
| (사)수상인명구조단 | 033-653-7913 | (사)대한구조협회 | 054-476-2119 |
| (사)한국해양구조협회 | 051-714-3695 |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협회 | 02-394-1331 031-943-4447 |
|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 070-5057-3377 | (사)복지와 건강 | 055-755-7800 |
| (사)한국구조연합회 | 02-365-1112 |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063-221-9800 |
|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 02-928-2258 | * '18.11.10 지정취소 | |
|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 051-404-0900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 02-422-6119 |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